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74

발의연월일: 2021. 4. 22.

발 의 자: 김철민·김민철·김윤덕

도종환 · 민형배 · 박 정

박찬대 · 신동근 · 안민석

유동수 · 윤후덕 · 이원욱

이해식 • 이정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조문이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학교급별 학생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.

이에 중도중복장애 등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'중도중복장애'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,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/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5조 및 제27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중도중복장애

제27조제2항 중 "순회교육"을 "중도중복장애 등으로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1/2의 범위 내에서 학급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순회교육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	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	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	
람으로 진단・평가된 사람을 특	
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1. 중도중복장애</u>
<u>11</u> . (생 략)	<u>12</u> 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	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
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 ①	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	②
고 <u>순회교육</u> 의 경우 장애의 정	중도중복장애 등으로 보다
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	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
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.	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1/2
	의 범위 내에서 학급 설치 기준
	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순회교육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